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제한 범위 축소〉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8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제한 범위 축소	3
※ 참고자료	9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요	9
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과 시설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교 ...	10

I. 제안경위

2026년 6월 25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단 대행 전문기관 중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해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한 자가 본인의 과오 은폐 등의 시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나 기술진단은 미생물 반응조, 송풍기, 펌프 각종 계측기 등의 성능이 설계당시와 비교해 최적의 운영비용, 방류수질을 도출하는 공정의 유기적 연계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물리적 결함과 내구성을 진단하는 안전진단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이미 종료된 과거 20, 30년 전의 설계·시공 실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음.

이에 공공하수도의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의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제한 범위 축소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등에 대하여 기술진단 대행을 제한하는 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①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u>계열회사인</u> 경우	2. ----- ----- ----- <u>계열회사로서</u> <u>「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u> <u>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u> <u>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u>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 대행에 관한 적용 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 또 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 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면서 공공하수도에 대한 운영·관리 책임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1)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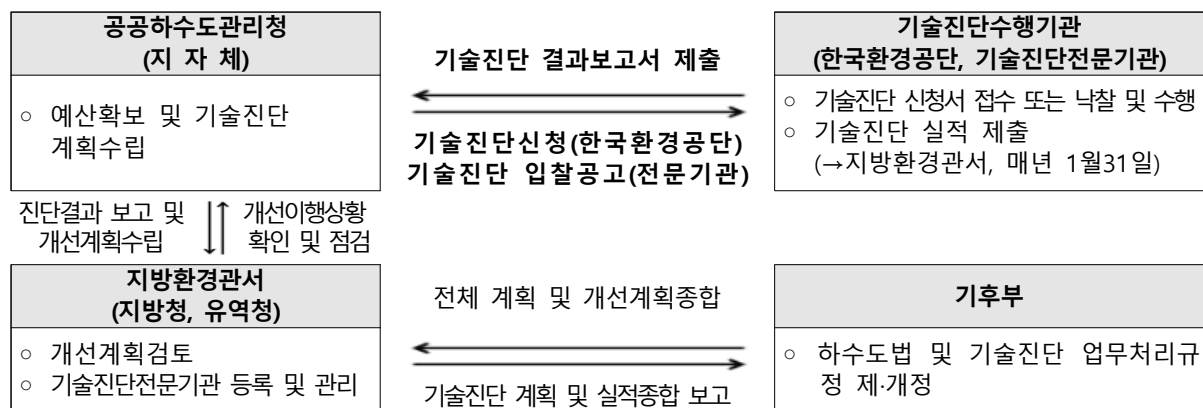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는데³⁾, 현행법은 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다만, 해당 대행은 이해충돌에 의한 기술진단 부실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계열회사인 경우’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됨⁵⁾.

[기술진단 절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3)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참고자료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요>

- 5)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그러나 최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를 영구히 기술진단 대행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설 성능 유지와 운용 효율 개선이 목적인 하수도 기술진단의 성격⁶⁾과 일정 기간으로 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할 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비례성 확보⁷⁾⁸⁾와 다양한 전문기관 참여를 통한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준공 또는 사용개시 후 최초로 실시되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단서조항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정 당시 참고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시설의 성능 유지와 운용 효율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함.

<참고자료2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과 시설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교>

7) 과잉금지 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자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 제한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다른 유사한 제도와 비교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본권 행사 자체의 제한보다는 기본권 행사의 방법이나 인적·물적 범위를 제한하거나, 획일적인 기본권 제한보다는 사안별로 차등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한다.(자료: 「법제기준과 실제」 p.48, 국회 법제실, 2024.5.)

8)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하수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는 7년, 관로매설·기기설치는 3년임.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는 기술진단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참여 제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시설의 성능과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인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하수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인 반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실시되므로 공중에 따라서는 최초 기술진단 시점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경과할 수 있음⁹⁾.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행 금지 취지를 반영하고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준공일 또는 사용개시일 후 최초 도래하는 기술진단’까지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¹⁰⁾¹¹⁾¹²⁾.

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초 기술진단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또는 준공 후 5년 후에 시행되는 반면, 일부 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또는 3년에 불과하므로 최초 기술진단 시점에는 기술진단 대행 제한이 사실상 해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0) 참고로 현행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별표 1]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준공일로부터 각각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50m ³ /일 이상)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50m ³ /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하수도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하수관로(합류식, 우수, 우수) · 하수저류시설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11) 한편, 앞서 제시한 준공 또는 사용개시 후 최초 기술진단에 대한 참여 제한 방안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가 토목구조물, 관로, 기계설비, 전기·계측설비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이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설비공사는 1년으로 시설·공종별로 서로 다름.

문 의 처

02)6788-5541

개정안은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참여 제한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기간 중 어느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 공공하수도 전체에 대한 참여 제한이 해제되는지 적용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술진단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2) 참고로, **대한기술진단협의회**는 개정안과 같이 공공하수도의 설계·시공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기술진단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①자가검증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 및 이해충돌, ②진단제도 신뢰성 약화 및 부실진단 우려, ③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업역 잠식 및 시장 붕괴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깊은 검토 및 기술진단 업역과의 선행적인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대행 규제 완화 대상에서 설계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중 ‘설계 분야’ 수행업체 비율이 약 80%(2026년 2월 기준)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협의회 의견 반영할 경우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의미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참고자료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요

□ **(목적)** 공공하수도의 시설·운영·유지관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

□ **민간등록 현황** : 총 147개소('26.6월 기준)

□ **대상시설 및 시기**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하수도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하수관로(합류식, 오수, 우수) · 하수저류시설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	-	

□ **기술진단 업무**

- **(현상·공정진단)** 당초 설계자료와 운영현황, 현장 실측자료 등을 토대로 적정운영 여부 확인 등 처리계통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제시
- **(시설진단)** 처리시설의 기계·배관설비, 전기·계장설비 등 설비 전반에 대한 정상작동여부, 운전효율 검토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운영진단)** 처리시설 운영조직, 운영인력, 유지관리비의 조사·분석, 단위시설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 운영요원 실무기술능력 배양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자료 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과 시설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교

구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목적	공공환경시설의 시설운영유지관리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시설의 수명 연장과 처리효율 개선 유도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 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 확보
관련근거	하수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시년도	1995	1995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50m³/일 이상)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관로 - 하수저류시설 - 분뇨처리시설	- 교량, 터널, 항만, 댐, 하천 - 건축물(공동주택, 공동주택외건축물) - 상하수도 - 옹벽 및 절토사면 건축물 (1,2종 시설물 구분)
진단내용	현상 및 공정진단, 시설진단, 운영진단 (시설의 운영 및 처리효율 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유지 등 준공 후 건물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진단기관	- 관리주체 -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행 가능	-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안전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정밀안전진단)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신청) - 기술진단전문기관 (수의계약, 입찰)	- 국토안전관리원 (전담시설만 수의계약) -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계약, 입찰)
결과검토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평가제도 (정례화)
검토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